

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정형식 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개최, 회기, 집회, 심의,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조 ~제6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8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.

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 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 내로 한다.

제4조 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

제5조 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